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[별지 제10호의4서식] <개정 2018. 3. 21.>

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

❶ 신청인	① 상호 또는 법인명	② 사업자등록번호
	③ 대표자 성명	④ 생년월일
	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(전화번호 :)	

❷ 과세연도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	
❸ 세액공제 요건 확인 (⑥ ≧ ⑦이어야 함)	⑥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	⑦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

❹ 세액공제 계산내용

가. 정규직 전환 근로자

	⑧ 성명(생년.월.일)	⑨ 직전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계속 근무하고 매월분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될 것	⑩ 해당 과세연도 중에 비정규직 근로자(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)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였을 것 (정규직 전환 연월일)	⑪ 직전 과세연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임원, 7천만원 이상 고액연봉자, 최대주주·최대출자자 및 그 친족이 아닐 것
A	(. .)	여, 부	여, 부(. .)	여, 부
B	(. .)	여, 부	여, 부(. .)	여, 부
C	(. .)	여, 부	여, 부(. .)	여, 부
D	(. .)	여, 부	여, 부(. .)	여, 부
E	(. .)	여, 부	여, 부(. .)	여, 부

나. 세액공제액

	⑫ 해당 과세연도 임금	⑬ 직전 과세연도 임금	⑯ 임금 증가분 합계액 (⑭−⑮)	⑰ 공제율	⑱ 세액공제금액 (⑯×⑰)
A					
B					
C					
D					
E					
합계	⑭	⑮			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6조의4제1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작 성 방 법
1. ⑭란 및 ⑮란의 "합계"에는 임금 합계액을 적되, 직전 과세연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임금 합계액을 그 과세연도의 월수(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합니다)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. 2. ⑰ 공제율은 중소기업은 20%, 중견기업은 10%, 그 외 기업은 5%를 적용합니다.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]